

# 清掃原因者에 大型施設者도 포함 마땅

自然公園관리의 自立度 높이고 民間團體도 支援해야…….

吳 判 龍

환경보전과 정화사업을 민간운동으로 擴大시키려는 목표로 年內에 범국민 환경보전운동추진협의회가 발족될 단계에 이르렀다. 이같은 정부의 인식변화는 환경정화사업은 政府의 행정력만으로는 소기의 목적달성이 어렵고 一過性이 아닌 持久的인 국민운동이 돼야하기에 민간단체의 主導가 절대적임을 재확인한 것으로 본다.

이토록 환경보전업무가 어렵다는 것은 넓게는 國家間的 환경예방 및 회복노력에서 부터 정부 각部處끼리의 협조문제, 地域間的 공동노력 문제에 이르기까지 일사불란한 협조체가 이루어지지 않고선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환경청을 비롯한 각부처 산하에 있는 주요 민간단체의 공동보조가 절실히 요청되며 지원책에도 현재까지의 一過性的이며 展示效果的인 사치성 예산을 대폭삭감하여 지속적인 국민운동을 꾸준히 실행 하고있는 민간단체를 재정적으로 육성해 나가야 할 것이 가장 주요한 과제라 하겠다.

이와같은 재정의 조성문제도 행정부처간의 협조와 국회, 총리실, 경제기획원, 감사원 등의 총괄 기능과 차원높은 정책으로 어렵지 않게 해결될 것으로 여겨진다.

## 橫的인 協助 잘 안되는 국립공원 관리 애로상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정책도 실천과정에서 부처간의 횡적인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실효를 건울수 없다는 것이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예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국제적인 국립공원관리의 추세에 맞추어 국립공원관리의 전문화, 균형있는 효율적 관리등을 위해 86. 12. 31 자연공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88. 7. 1. 국립공원관리공단이 발족된지 이제 2년이 지났다. 그동안 소

白山을 비롯하여 邊山半島와 月出山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됨에 따라 총20개국립공원에서 특수한 여건을 가진 漢拏山국립공원과 慶州국립공원을 제외한 18개국립공원을 관리하고있으나 만2년이 넘도록 公園施設物을 地方自治團體로 부터 완전히 넘겨 받지 못하고 있으며 어떤 곳에서는 87년 公園설립 직전에 주차장을 자치단체예산으로 조성했다는 이유로 개인에게 팔아버린 사례 등도 있어 최소한 80~90%의 財政自立을 달성해야 할 정부투자 비영리 재단법인인 公園관리공단운영을 정면으로 방해하는 듯한 인상을 주게했다.

이같은 事例의 根源은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설립근거 규정이라 할수있는 자연공원법 제8장의 2(法49조의 2~49조의 26)가 너무나 허약한데서도 문제점이 있다. 공단은 설립후 관리소 2개소, 분소 22개소, 매표소 7개소를 증설하는 등 인력부족을 무릅쓰고 안간힘을 다하고 있는 듯하다.

法改正작업당시 국립공원지정(67. 12. 29지리산국립공원지정)이후 20년동안 건설부에서 위임관리를 맡아왔던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공단설립의 반발을 의식해서였는지 마땅히 강제규정으로 했어야할 「國有財産의 無償貸付 등」(법49조의 16) 國有財産의 轉貸(법49조의 17)가 任意規定으로 돼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국도의 두뇌적인 국립공원의 보존과 관리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任員(법49조의 7-4항)을 보더라도 當然 職理事에는 경제기획원次官, 내무부次官, 그리고 주무부인 건설부次官을 규정하고있어 관계 부처간의 협조없이 국립공원관리가 어렵고 또 관련부처나 관련기관 단체가 협동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설립했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이 넘도록 국립공원구역내에 있는 국립공원의 이용객이나 관리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각종 시설물을 넘겨받지 못하고 있다한다.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재산(국유가 아닌 도·시·군재산)이란 이유로 자체관리를 고집하고 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시기상조라 하겠다.

한마디로 국립공원관리의 허점이며 공단의 재정자립을 거부하고 나아가서는 공원관리의 효율성을 무시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173件的 國費로 건설된  
공원시설物 밝혀내

국립공원관리공단측에서는 그동안 각종자료를 토대로 면밀히 이들 시설물의 건설자금출처를 조사해왔는데 이미 173건이나 國費로 건설된 사실을 밝혀내고 국유재산으로 등기하도록 건설부에 요청했다한다. 이 가운데는 도관리를 주장해온 周王산의 대피소(휴게소로 사용)4개중 3개소 雪嶽산의 7개소중 2개소, 五台山의 2개소중 1개소도 포함되었다. 과거 20년간 정부에서 자치단체에 이들 시설물 건설 예산을 영달할때 「국유재산으로 등기도록」 사후관리지사가 없었던것이 흠이라 지적할수 있겠으나 일단 국가적인 국립공원관리의 정책이 수립되어 설사 任意규정이라 할지라도 그에 대한 법조항이 있는 이상 국토보존의 대국적인 견지에서 공원 관리를 위해 필수적인 시설물이나 동산 부동산은 마땅히 이관해주는 아량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하나의 가설이오 지나친 추리이긴 하나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재정자립을 어렵게해서 현재와 같이 총109억 예산중 국고 보조가 40% 선인 42억이나 계속되게하여 존립목적 위태롭게 만들고 다시 지방자치단체 위임으로 환원시켜 보겠다는 것인지? 역설적으로 말하면 국립공원위임 관리 당시 수익이 있었다는 것인지? 조만간에 닥아올 地自制 실시와 견주어 볼때 지방재정자립을 위해서도 시대착각적인 옹졸한 행정자세라 아니할 수 없다. 과거 국가예산 이외에도 상당한 지방 재정이 국립공원관리에 투입되었다고 듣고 있는데 설립일찬한 공단의 인력, 장비 등 여러가지 취약점으로 당장에 팔목할 발전이 없다는데서 오는 자연환경보존상의 애국적인 염려와 기우라면 다행한 일이다. 마땅히 도와줄것은 대국적 견지에서 도와주고 나무랄것은 부처간의 정책으로 질타·개선시켜야만 할 것이다. 173건외는 자료추적이 어렵다고 하니 이것 또한 국가재산 관리상 중대한 실책이 아닐 수 없다.

자연공원법 제1조(目的)에 「이 법은 자연공원의 지정,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풍경지를 보호하고 적정한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있다. 제2조(定義) 1항에선 自然公園이라한은 國立공원, 道立공원, 郡立공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清掃原因者에 大型公園시설  
사업자 포함돼야

제2조 8항에는 「清掃原因者라 함은 공원 안에서 폐기물을 버리는 者나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물품의 제조업체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를 말한다」고 돼있으며 시행령 제2조의 2(청소원인자)는 법 제2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원인자는 공원에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주류·청량음료 기타 식품제조업체로서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자로 한다고 소폭규정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주류·청량음료, 기타 식품제조업 뿐만 아니라 「버나」에 사용되는 부탄가스, 건전지류 등 예상밖의 폐기물이 날로 확산되고 있으므로 모든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제조업 및 大型施設 업체등으로 확대개정돼야 하며 모든 자연공원이 혜택받도록하고 나아가서는 제3조(공원보호등의 의무)도 좀더 엄격히 규정돼야만 모든 자연공원의 훼손이 방지되고 균형있는 청소원인자 부담으로 모든 자연공원의 관리운영이 원활히 될것으로 본다. 음료수나 과자등속서 발생된 오물이나 모처럼 자연을 찾는 탐방객으로 부터 입장료와 청소원인자 부담을 징수하면서 막대한 환경영향을 끼치는 케블카, 골프場, 스키場, 승마장, 각종 오락·고급위락·문화시설·대형호텔 등에 대한 적정한 청소원인자부담도 아울러 해나가도록 법개정시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공단의 재정자립을 이룩하고 지방자치단체서도 자연공원 보전에 만전을 기할 수 있고 절약된 정부예산은 모두에 언급한 대로 허약한 민간단체의 꾸준한 계도홍보비 충당과 육성에 투입할 수 있을 것이다.

(筆者：本會事務局長)

自然사랑 나라사랑